

---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종합대책

---

2013. 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

# 목 차

I. 추진 배경 .....	1
II. 그간 주요추진 사항 .....	2
III. 상황진단 및 평가 .....	3
IV.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국 지위 획득 .....	6
가. 100% 백신접종 추진 .....	7
나. 위험농가 밀착관리 .....	9
다. 유입방지 및 신속대응체계 정착 .....	10
라.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11
마. 청정화 유지 및 백신금지 청정국 추진 .....	12
V. AI 상시예찰 및 위험관리로 재발 방지 .....	13
가. 상시예찰 및 사전예방관리 강화 .....	14
나. 특별점검 및 신속 대응 .....	15
다. AI 공동 대응체계 구축·운영 .....	16
VI. 선진제도 조기정착 및 중장기 방역대책 .....	17
가. 농가·지자체 상시방역 체질화 .....	18
나. 선진방역제도 조기정착 .....	20
다. 민간방역 활성화 등 인프라 확충 .....	23
라. 국제 가축방역협력 .....	24
마. 중장기 가축방역대책 수립·추진 .....	25
VII.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	26

## I 추진배경

- ◇ '10~'11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2조 8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 ◇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구제역·AI 재발 방지 및 청정국 유지

### □ (국내발생)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는 '11년 최종발생 이후 현재까지 재발하지 않은 상황 【참고1: 과거 발생·재정지출액】

- 구제역 : '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 발생 후 현재까지 비발생
  - \* 지금까지 28건의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있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
- AI : '11년 5월 16일 경기 연천 발생 후 지금까지 비발생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없었으나, 저병원성은 지속적으로 검출

### □ (주변국) 구제역과 AI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주변국이 상재국(常在國)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음

- 구제역 : 매년 60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국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모두 지속 발병
- AI : '12년 이후 14개국에서 발생하였고, 주변국인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호주 등에서 출현 (최근 중국 인체감염 AI 발생)

【참고2: 구제역 및 AI 해외발생동향】

### □ (추진과제) '10년 구제역 발생이후 추진한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적 종합방역대책 수립·추진

- 구제역 : 재발방지와 함께 '14년 5월까지 청정국 지위 획득
- AI : 청정국 유지 및 중국 등 해외 유입 방지 대책 마련
  - \*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11년 9월 5일 청정국 지위(선언) 획득

## II 그간 주요 추진 현황

◇ '10년 구제역을 계기로 “가축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등 추진하여 방역기반 강화 성과

### □ (제도정비) 축산업 허가제, 축산차량등록제 등 선진제도 도입

- '13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방역시설,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법)
- '12년 8월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축산차량등록제” 도입 (가축전염병예방법)
- 발생시 강력한 초기 대응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등

### □ (국내방역)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예방하는 방역시스템 강화

- 구제역, AI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12.10~'13.5)을 설정하고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지역담당관(108명)을 통한 월 1회 점검
-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정기점검(1회/주 이상)을 통해 소독 및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 미이행 농가에 과태료 부과  
\*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3종 혼합백신 농가 접종
-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구제역·AI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 □ (국경검역) 국경검역 관리시스템 및 소독의무화 추진

- 축산관계자 출·입국, 항공운항 등을 실시간 확인·활용할 수 있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 구축 ('11년 5월~)  
\* 축산관계자 입국정보 확인 → 축산관계자 소독 → 소독증명서 발급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시 신고 및 소독의무화 ('11년 7월~)

### III 상황진단 및 평가

- ◇ 선진제도, 인프라 확충 등으로 방역기반은 구비되고 있으나, 2년여간 구제역·AI 비발생으로 농가 경각심 저하
- ◇ 일부 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 저병원성 AI 지속발생, 남방철새 유입기간(4~5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가 구 제 역

- (백신접종) 수급은 차질이 없으나, 최근 일부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 관리 대책 수립 필요
    - 일부 중·소규모 농가의 방역의식 미비로 백신접종·소독 등 미흡 - 백신 미접종 등으로 과태료 처분 농가 지속 발생 (43건, '12.7월~'13.1월 기준)
    -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율이 소는 80%이상 유지되나, 돼지는 일부 20개 시·군이 60% 미만으로 백신접종 미흡 추정 ('12.12~'13.2)
  - (위험농가) NSP\* 예찰 등 총괄관리는 양호, 일제검사 등에서 검출된 각각 위험농가별로 밀착 관리 필요성 대두
    - 693농가, 4587두 중 조기도태 등으로 257농가(37%), 1,476두(31%)남음 ('13.2)
    - 경기> 충북> 강원> 충남> 경북 순으로 NSP 양성축 검출
- \* NSP란?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 약자로 혈청검사시 NSP항체가 나오면 통상 구제역 감염 동물로 판단하여 특별농장관리
- (매몰지) 정부합동점검·상시 점검 등으로 대부분 양호한 관리상태이나, 해빙기·집중호우시기 등에 특별점검 필요
    - 4,799개소 매몰지 관리 (구제역 4,583개소, AI 216개소)
    - 봄철 해빙기, 집중호우시기 등에 매몰지 유실, 침출수 유출 우려

## 나 조류인플루엔자(AI)

□ (국내검출) 야생조류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상시예찰 결과, 저병원성(H7 및 H9형) 지속적으로 검출

○ 야생조류 : 주로 H1형, H6형 등이며, H7형도 평균 5%내외 검출

○ 전통시장 : H9N2형 일부 분리 (검사건수 중 양성율 8.27%)

※ 금번 인체감염 중국 AI 유전자 검사결과, 국내 야생조류와 연관성이 없음

□ (유입요인) 봄철은 AI 발생국인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남방철새 유입시기 【참고3: 철새 이동경로】

○ 봄철은 철새 유입시기에 온도 상승으로 축사 창문 개방 등으로 조류 등의 출입 용이로 발생 위험 노출

○ 영농 준비로 겨울철 철새 배설물 등에 오염된 논, 밭 작업으로 농기구, 신발·의복 등을 통해 축사 내 유입 가능성 증가

□ (중국AI) 3월 중국AI 인체감염·사망 사건 발생으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경검역 및 예찰 강화 필요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중국AI는 가금류는 저병원성이지만 사람은 감염시 심각한 질병을 유발 잠재성 발표(4.13)

### < 중국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람 사망 발생 상황 >

▷ 중국, H7N9형 AI에 의한 인체감염·사망 발생 보고('13.3.31)

▷ 중국 상하이 등 28도시, 126명 감염, 24명 사망('13.4.29)

\* 지금까지 AI(H5N1)에 의한 사망은 있었으나 H7N9형 사망사례는 세계 최초

\*\* H5N1형 인체 감염 및 사망 사례 : 622명 감염, 371명 사망(WHO)

▷ 지금까지 사람간 전염가능성은 낮으나, 중국정부 가능성 조사('13.4.14)

▷ 대만 정부, H7N9형에 의한 감염자 1명 발생 발표('13.4.24)

## 다 공통 사항

□ (차단방역) 출입차량·거래상 등록제도 도입으로 기틀 마련 되었으나, 아직 농가에서 체계화·생활화 미흡

○ 출입통제 정도로 차단방역 인식, 방역활동 체질화되지 못함

\* 축종별, 규모별 현장에 맞는 차단방역 매뉴얼·모델 개발 필요

○ 선진국은 식품업체의 위해요인 유입방지 수준으로 강화 추세

### < 참고 > 차단방역 (Biosecurity)

- 질병의 유입·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활동의 총합 (미국 APHIS)
- (예) 오염/비오염 구역 설정, 입식가축 검사·격리 검역, 오염원 차단

□ (민간방역)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농협 공방단 소규모 농가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나 보다 민간방역 활성화 필요

○ 방역은 중앙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분명하여 선진국은 지자체 또는 민간 방역활동이 활발하나, 우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

\* 선진국은 축종별 협회 중심으로 방역대책 활동 전개 활발

\* 우리나라도 '09년 1월부터 한돈협회에서 돼지 구제역·열병 박멸대책위원회 운영

○ 농협 공동방역사업단(400개) 등 민간방역의 호응도가 높아 향후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 등 민간방역 활성화 추진 필요

□ (국경검역) 축산 관계자 출입국 관리는 안정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제도는 있으나, 사후관리 강화 필요

○ 국경검역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축산관계자 출입국 안정적 관리

\* 등록 축산관계자 입국신고·소독조치율 : ('10)64.3% → ('11)99.0% → ('12)99.8%

○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일제점검 등 사후관리 점검 필요

\* 송출국 현지교육, 입국시 관리, 도착직후 교육은 이루어지나 사후관리 미흡

\*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현황 : 3,165명('13년 4월, KAHIS시스템)

## &lt; 단계별 구제역 청정국 획득·유지 전략추진 &gt;

① 재발방지 → ② 청정국 지위획득 → ③ 청정국 유지



## 《 주요 추진 방향 》

## ① 백신접종 100% 실시로 재발방지 청정국 여건 확립

- 최소한 2년이상 비발생, 80%이상 면역방어력 확보

## ② 구제역 위험농가 밀착관리로 청정화 기반 구축

- 위험농가의 조기도태·검사관리로 구제역 전파위해요인 차단

## ③ 구제역 유입방지 및 유사시 신속 대응 체계 구비

- 축산관계자 등 국경검역 및 가상방역훈련(CPX) 지속실시

## ④ 14년까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청정국 요건에 맞는 방역정책 추진 및 전담팀 운영

## ⑤ 구제역 청정국 유지 및 백신금지 청정국 추진

- 백신접종 청정국 안정화 → 위험도 평가 → 백신금지 청정국



## 가 100% 백신접종 추진

- ◇ 구제역 재발방지의 핵심은 100% 백신접종 추진
- ◇ 최소 2년 이상 구제역 비발생, 80%이상 방어면역력 확보 및 국제기준에 적합한 백신 사용 (OIE 청정화 요건)

### □ (백신접종) 방역의식 약화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 근절시까지 지속 점검, 관리체계 및 교육·홍보강화

- 소규모 농가는 노인, 부녀자 등으로 백신접종이 쉽지 않아 기피현상, 고령 소규모 소(牛)농가 접종시술비 지원 등을 통한 100%접종 추진
- 분기별로 백신공급량, 항체양성율을 종합 분석하여 백신접종 실적 하위 시·군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집중점검 실시
  - \*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지자체는 종합평가에 반영
-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검역본부·방역지원본부) 중앙기동점검반(9개반 19명) 중심으로 백신접종 집중점검
  - \* 백신 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 (1차) 5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500만원
- 백신담당 실명제 공무원(22천명)을 통한 지속적으로 농가별 접종 실태·점검·지도 (월1회 이상 농장방문, 주1회 이상 전화·문자발송)
  - \* 백신담당 실명제 공무원 운영실태 조사 (반기별 1회 실시)

### □ (백신공급) 농가에 대한 공급량은 충분히 확보하고, 그간 소량 백신 공급 요구에 대응방안 마련·추진

- '13년 3,400만두분 계약물량 확보로 백신 수급의 차질 방지
  - \* 백신공급 : ('11) 1,267만두 → ('12) 3,200 → ('13) 3,400
- 그간 소규모 농가의 개선요구에 따라 현행 25두분 포장백신과 함께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10두분 소량 포장 공급
  - \* 10두분 소량포장 백신 공급량 : 370만두분 ('13년)

□ (방어력) OIE 기준인 방어면역력 80%를 고려한 항체양성을  
목표 관리 및 전국적 예찰 지속 추진

- 달성목표 : 백신접종이 충분히 될 경우 80% 이상이 가능하므로  
전국 평균 80% 이상 항체양성을 확인검사 실시
- 확인검사 : 전국 항체(SP)검사 ('13년 86천건) 【참고4: 검사계획】
  - \* 검사결과 : ('12) 소98.5%, 번식돈80% → ('13.1~2) 소96.8, 번식돈81.9
  - \* 조사대상 : (당초) 소·염소·돼지 → (개선) 소·염소·번식돈 ('12.4월)

OIE 방어면역력 구비조건 : 예방접종 축종의 80% 이상에서 방어면역 구비(방어  
면역 수준은 감수성 축군의 규모, 축종별 구성 및 밀집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연구개발) 백신 검정체계 개선, 백신 연구개발 및 자체생산을  
위한 백신연구 센터 설립 추진 【참고5: 연구센터 추진계획】

-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검정 실시
  - \* (종전) 수입서류 확인 → (개선) 수입서류확인 및 동물성 시험
- 중장기적으로 백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자체 생산 기반 구축
  - 1단계: 항원 수입후 완제품 국내제조 및 백신연구센터 설립('13~'16)
  - 2단계: 항원 자체개발 후 국내 백신생산('17년 이후)

□ (교육홍보) 구제역 방역·신고요령, 농가 백신접종 독려 및  
올바른 백신접종법 교육·홍보 지속 추진

- 농가 홍보·교육으로 백신 접종율 제고 등 추진 【참고6: 홍보교육 실적】
-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홍보로 잘못 사용으로 인한 화농 발생  
등 최소화 (필요시 백신접종방법 관련 연구사업 추진)
  - \* 일부 농가에서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나 현재까지 조사결과는 백신자체  
부작용이 아니라 백신접종 방법 등의 문제로 판단

## 나 위험농가 밀착관리

◇ 위험농가\* 검사·관리로 구제역 전파 위해요인 차단

\* 위험농가 : NSP항체가 검출된 가축이 있는 농가

◇ 1년 이상 위험농가의 양성축 검사·관리로 바이러스 순환부재 증명 (OIE 청정화 요건)

□ (검사체계) 과거 구제역 매몰농장, 종돈장 등 위험군 목적예찰 및 무작위 통계학적 예찰을 통한 NSP항체 양성축 색출

○ 검사대상 : 소·돼지·염소·사슴·야생동물(멧돼지,노루,고라니)

○ 검사계획 : 무작위 32,256두, 목적 48,886두 【참고4: 검사계획】

□ (관리현황) NSP항체가 검출된 위험농가(693호, 4,587두) 특별 관리 및 1년간 지속검사로 바이러스 순환부재 증명

○ 위험농가의 양성축 이동제한·조기도태, 인접·연관 농가 검사

○ 1차 검사 이후 2차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순환부재 증명 추진

\* 검사결과, 위험농가에서 NSP 양성축 증가없고, 병원체 소실(항원검사 음성)

○ 현재 조기도태 추진하여 257농가, 1,436두 남음 (대부분 젃소)

\* 도태보상금 : (젃소) 200~500천원/두, (한우) 200~400, (돼지) 150

□ (개선방향) 농가별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축종별 특성에 맞게 조기도태·평생관리 추진 【참고7: 관리지침 요약】

○ 농장관리 : (현행) 농가별 기록없음 → (개선) 농장별 기록관리

○ 양성축 : (현행) 조기 도태 → (개선) 현실적으로 조기도태가 어려운 젃소는 평생이동관리, 기타 축종은 조기 도태

○ 음성축 : (현행) 양성축에서 2차검사로 음성축이 된 가축의 해제방안 없음 → (개선) 음성축 최종 검사후 해제\*

\* 음성축 해제: 이력관리되는 소에 한하며, 돼지 등은 제외

## 다 유입방지 및 신속대응 체계정착

- ◇ 특별방역기간 중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 ◇ 신속한 신고·대응·사후관리 체계 완비 (OIE 청정화 요건)

- (유입방지) 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에 대한 출입국 축산관계자, 축산물 검역 대응체계 지속 운용
  -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국경검역관리시스템), 미신고자 지자체통보·확인(매주), 홍보캠페인, 공항만 실태 조사(반기 1회) 등 상시관리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
    - \* 점검사항 : 고용신고, 예방교육, 소독실시, 기록관리 (반기별 1회)
- (신고체계) 농가 인식도 제고, 정기 전화예찰 및 신고전화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
  - 구제역 의심증상 농가 교육·홍보 및 전화예찰(월2회) 지속 실시
  - 신고전화 1588-9060(중앙), 1588-4060(지자체) 불시 점검 (분기 1회)
- (초동대응) 구제역 위험시기(10월~5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 대비
  - 초동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 반기별 1회
    - \* '13.5.15 구제역 CPX 실시(안행부 합동), 지자체 CPX 합동평가(연말)
  -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
  - 사전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편성(13천명), 거점소독시설 위치선정 점검
- (매 물 지) 집중호우 시기 등에 매몰지 훼손·침출수 유출 대비 사전예방 일상관리 및 주기적 합동점검
  - 지자체에서 일상관리, 해빙기·집중호우시 중앙합동점검 실시
  - 문제 발생시 “합동기동대응반(농식품부, 환경부 등)”과견, 개선조치

## 라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 OIE 청정국 요건을 고려한 방역대책 점검·보완 추진
- ◇ 구제역 청정국 추진 전담 T/F 구성 운영 (6개반 14명)

- OIE 백신접종 청정국 주요 요건을 고려하여 구제역 방역 종합 대책 수립 및 추진

OIE 주요 요구 조건	진행 상황
① 지난 2년간 구제역 비발생	충족 ('13.4.21이후)
② 정기적 백신접종 (80% 방어면역력)	충족 가능 (80%수준, 소·번식돈)
③ 구제역 백신의 적합성	충족 (OIE 적합 백신사용)
④ 지난 1년간 바이러스부재(不在) 증명	충족 가능 (NSP등검사·관리)
⑤ 정기적·신속한 질병보고 체계	충족 (OIE 규정에 적합)
⑥ 조기검출, 예방, 통제규제 이행	충족 (법령, 시스템 구비)
⑦ 과학적인 구제역 예찰(검사) 실적	충족 가능 (검사실적 충족)

【참고8: OIE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세부기준】

- 청정국 지위 신청·평가일정에 맞도록 전담T/F 운영을 통한 종합 신청보고서 작성·보완·제출
  - (보고서) 4~6월 중으로 청정국 신청 종합보고서(안) 마련(약 100쪽)
  - (신청) 8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사무국에 평가 신청
  - (평가) '13.10월~'14.2월 중 OIE 평가위원회 참석 및 설명

**‘14년 5월 OIE 충회,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 마 청정국유지 및 백신금지 청정국 추진(중장기)

◇ “백신접종 청정국” 획득 후 “백신금지 청정국” 전환 추진

\* OIE 구제역 등급 : 발생국 → 백신접종 청정국 → 백신금지 청정국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백신금지 청정국”

\* 우리나라 축산물 일본 등 수출시 구제역 백신금지 청정국 요건 필요

□ (사전평가) 백신금지 청정국 추진을 위한 백신접종 중단에 대한 위험도 사전평가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판단)

○ 해외발생상황, 국경검역·국내방역 여건 등 시나리오별 위험분석

\* 백신접종 청정국 획득 후 안정화 단계를 거친 '16년 이후 평가사업 추진

○ 검역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종합 위험도 평가

\* 백신접종 청정국 중 백신금지 청정국으로 전환하는 해외사례 비교검토 포함

□ (추진방향) 사전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종별·지역별 백신접종 중단(안) 검토·추진

○ 1단계 (축종별) : 이동이 적고 단기간 사육·도축되는 비육돼지, 염소 우선 백신접종 중단 (브라질 등은 비육돼지·염소 예방접종 미실시)

○ 2단계 (지역별) :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도 단위별로 OIE 요건 충족시 “백신금지 청정지역” 선포

< 참고 > OIE 백신금지 청정지역 인증 주요요건

① 12개월간 구제역 비발생, 바이러스 감염부재, 백신접종금지(중단)

② 백신중단 후 예방접종 가축의 반입금지 (도축용 제외)

③ 비발생지역의 경계 관리, 감수성 가축의 이동통제 등

○ 3단계 (전 국) : 지역별 백신금지 청정지역 선포후 구제역 백신 불법 유통 근절대책 수립을 거쳐 “백신금지 청정국” 추진

AI 재발 방지 및 발생시 피해 최소화  
 < 상시예찰, 검역강화, 특별점검, 신속대응 >



### 《 주요 추진 방향 》

#### ① 조류인플루엔자 상시예찰 및 위험관리

- 상시예찰로 위험요인 조기검색 및 사전예방 조치
- 상시예찰 결과에 따라 검사대상 조정 및 강화
-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기소독 강화

#### ② 가금농장 특별점검·검역강화 및 신속대응

- 특별방역기간 중 농장 특별점검, 국경검역 강화
- 농가 교육·홍보 및 AI 가상방역훈련 지속 실시
- 중국 인체감염AI 발견시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 ③ 중국AI 발생관련 유관기관과 공동대응

-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관리본부 공동대응체계 구축
- 중국AI 위기대응 전담반 구성·운영 (일일상황점검)
- 유사시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및 점검

## 가 상시예찰 및 사전예방 강화

- ◇ 상시예찰을 통한 조기 위험요인 검색, 사전예방 조치
- ◇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기소독 강화

### □ (상시예찰) 지속적인 상시 예찰을 통한 조기에 위험요인을 검색하여 사전에 예방·집중관리

- 유입경로별 예찰검사(철새, 닭, 오리 및 기타 가금류)를 통한 발생 위험 최소화 및 조기경보 시스템 운용 【참고8: AI예찰계획】
- 상시예찰 검사대상 확대 : 임상검사 2종 → 3종 (종계장 추가)
  - \* 5년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 중심으로 집중모니터링

#### < AI 상시예찰이란 >

- ◆ 연중 전국 가금농가, 전통시장, 야생철새 등을 대상으로 항원/항체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사전 검사시스템 ('08년부터 실시)
  - '13년 가금농가(217천건), 전통시장(3천), 야생철새(8천, 포획·분변) 등 검사

### □ (위험관리) 위험도가 높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소독강화

- 전통시장(351개소) 토종닭 판매시설 소독강화 (주1회→주2회)
  - \* '12년 검사결과 : 전통시장 > 야생조류 > 종오리 > 육용오리 순으로 저병원성 검출
  - \* 소독약지원 : (현행) 농가 → (개선) 농가·전통시장
- '09년부터 실시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실시
  - \* '09년 신종 플루(H1N1) 발생을 계기로 매년 위험시기(9~12월) 양돈농가 모니터링
  - \* 돼지(인플루엔자A형 H1N1, H3N2) 약 18,000여두 검사('12년)



## 나 특별점검 및 신속대응

- (특별점검) 특별방역기간 중 중앙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농장 방역실태 점검 및 AI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 특별관리
  - 중국 AI 인체감염·사망에 따라 중앙기동점검반 강화·운영
    - \* 중앙기동점검반 : 평시 8개반 16명 ⇒ 강화 24개반 48명 투입('13.4.5~)
    - \* 시·군별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편성 (13천여명)
  - AI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 특별관리(14일) 및 관련 농가예찰
    - \* (1차) 방역원본부 전화예찰 → (2차) 필요시, 시도 시험소 임상예찰
  
- (국경검역) 중국 인체감염 AI 발생에 따른 여행객, 수화물, 가금육 등 국경검역 강화
  - 중국 AI 상황 안정시까지 중국노선 전 공·항만으로 검색강화
    - \* 공항만(16개소) CIQ(출입국장) 검역인력 증가 배치 : (현행) 32명 → (강화) 52
    - \* 공항만(6개소) 중국노선 검역탐지견 집중투입 : (현행) 294노선 → (강화) 311
  -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출작업장 사후관리,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확인 강화 및 중국에 안전 축산물 수출 협조요청
    - \* 중국 AI 발생/인접 지역 수출작업장에 대한 긴급 현지점검 (11개소)
  
- (초동대응) 유사시 지자체·방역기관 등의 초동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AI 가상방역훈련 지속 실시 (반기별 1회 이상)
  - AI 상반기 가상현장훈련 (5.6, 전북 익산) 및 하반기 도상훈련
  - 중국 인체감염 AI의 국내 검출시 신속대응\* 조치
    - \* 중국 인체감염 AI검출시 방역요령에 따라 고병원성에 준한 방역조치
  
- (교육홍보) 축산관계자 대상 방역교육 및 홍보 강화
  - 축산업허가제 교육과 연계, 전국 순회 방역교육 실시
  - 전문교육기관에 AI 등 현장대응과정 신설, 집중교육(2회/년, '12~)

## 다 AI 공동대응체계 구축·운영

### □ (공동대응) 검역본부·질병관리본부와의 핫라인(hot line)연계 및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를 통한 공동 대응

- ▶ 주요 사람·동물 공통질병(AI, 광견병 등) 등 발생상황, 대책 상호 공유
- ▶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4월 중 AI분과위 개최)  
\* 위원회 구성 : 11명(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교수 등)

- 국립환경과학원(MOU체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AI 사회적 재난형 질병 관계자 합동교육 실시 및 핫라인 구축

\* 질병관리본부, 환경과학원, 검역본부와 합동(3회 580명)

### □ (전담반) “중국AI 위기대응 전담 TF” 구성·운영을 통해 유관기관 정보공유, 일일상황점검 등 특별 관리

- 검역본부 위기대응센터 중심으로 전담반(4개반) 구성·운영

\* 전담반 : 총괄방역반, 국경검역반, 기술지원반, 언론반

-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인체감염 확인 등으로 위기경보 격상(관심→주의)시 상황실 설치 등 공동 대처

### □ (협조체계) 범정부 차원에서 안행부,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 유사시 대비 협조 체계 구축 및 정비

- 중국산 인체감염 AI 검출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조치

- 가상방역 훈련 등을 통해 AI 긴급행동지침(SOP) 점검·보완

【참고10: AI 긴급행동지침 및 관련 부처별 역할】

## 재난형 질병 없는 지속가능한 청정 축산으로 도약



## 《 주요 추진 방향 》

## ① 농가, 지자체의 상시 방역 체질화

- 농가, 지자체 방역활동 생활화 지원·지도·점검
- 현장 특성에 맞는 “차단방역 매뉴얼” 제작·보급

## ② 선진 제도 조기정착 및 개선사항 적극 개선조치

- 축산업허가제·축산차량등록제·이력제 등 선진제도 조기정착
- 선진제도·시스템 사업 추진 중 보완사항 발굴·개선 조치

## ③ 민간방역 활성화 등 인프라 확충

- 생산자단체, 농협·방역지원본부 등 민간방역 활성화
- 축종 및 사육규모에 맞게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

## ④ 국제협력강화 및 중장기 대책 수립

- 한·중·일 3국의 협력방안 모색 및 OIE와 협력강화
- 중장기 가축방역 3개년(‘14~’16) 종합대책 수립·추진

## 가 농가·지자체 상시방역 체질화

- ◇ 농가, 지자체 방역활동 생활화 지원·지도·점검
- ◇ 현장 특성에 맞는 “차단방역 매뉴얼” 제작·보급

- (지도점검) 일부 농가 백신접종·방역관리 미흡 등으로 구제역·AI 재발 우려, 상시 자율방역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 지속
  - ① 장관·차관 무작위 현장점검 및 지역담당관(108명) 월 1회 점검
    - \* 검역본부(위기대응센터) 지자체 위기대응체계 점검계획 수립·추진
  - ② 농협 공동방역사업단(400개소)를 통한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 ③ 중앙기동점검반 현장 정기점검(1회 이상/주)을 통해 소독·예찰 및 백신접종 여부 등을 확인, 미실시 농가에 과태료 부과
  - ④ 전국 방역실태 일제점검, 방역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 및 가축방역약품(타 질병 백신 등) 무상공급 중단 등 제재 조치
  - ⑤ 지자체의 방역관리 평가시 단체장의 방역활동 중심으로 평가
    - \* 평가결과는 특별포상·교부금 차등 지급 (안행부 공동)
- (매뉴얼) 정부의존형 수동방역에서 농가 차단방역 생활화를 위해 차단방역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13~'14)
  - 축종별, 축산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활용형 매뉴얼 개발
    - (현행) 출입통제 수준 → (개선) 특성에 따른 표준화·체계화
  - 연구용역(6억; '13~'14) 및 해외사례 (캐나다, 영국 등) 조사
    - ▶ 축종별 21종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2(일괄사육, 비육), 산란계, 육용계, 오리, 사슴, 염소 및 종축 5(소, 돼지, 닭, 오리, AI센터)
    - ▶ 축산시설별 6종 : 부화장, 도축장, 사료공장, 비료공장, 집유장, 계란집하장
  - \* 해외사례 : (캐나다)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 (영국) 자율형 건강농장 플랜
  - 축산현장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농가 차단방역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예; 일본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 ※ 농식품부,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농가 방역일지·수첩 표준화

## 연간 상시 방역·검역 지도·점검·훈련 (요약)

구 분	국내 방역		국경 검역
	지도·점검	방역·훈련	
매 일	특별대책 기간 중 24시간 상황실 운영현황 및 비상 연락 점검 (무작위·불시)	축산농가 자율방역  소규모 농가 : 129천호 (농협 공동방역제단)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및 소독 (검역본부)
매 주	중앙기동점검반 지도단속 (백신접종, 소독, 기록의무)	전국 수요일 일제소독	미신고자 확인·관리 (검역본부/지차제)
매 월	장·차관 및 지역담당관 (108명) 현장점검	지자체, 일제소독 점검 - 특별기간 : 매월 1회 - 평시기간 : 분기 1회	구제역·AI발생국 여행 축산인 전화예찰* (방역지원본부)
	지자체, 백신담당자(22천명) 예방접종 점검·독려		* 입국후 7일/14일
	지자체,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지도·점검	축산농가 전화예찰: 월2회 (방역지원본부)	국경검역 홍보캠페인
분/반기	매몰지 합동점검 (해빙기,장마철 등 취약기)	구제역 및 AI CPX (상·하반기 1회 이상)	공항만 실태 종합점검 (검역본부)
	신고전화(1588-9060/4060) 분기별 불시점검	방역취약지역 점검 : 연2회 (농식품부/검역본부)	
연 간	지자체 합동평가 (연말)	지자체 가상훈련 (불시)	축산관계자 검역안내 서한 발송 (연1회)
	지자체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실태 점검 (연1회)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워크샵 (연말)	

## 나 선진방역제도 조기정착

◇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한 축산업허가제, 축산관계 차량등록제, 이력제 등 선진제도 조기 정착

□ (허가제) 적정사육 규모, 방역시설·교육 의무화 등 일정 요건을 정한 축산업허가제 차질없이 추진

○ 축종별 사육규모, 차단방역시설 등 의무화 【참고11: 추진계획】

\* 추진일정: ('13.2.23)기업농→('14) 전업농→('15) 준전업농→('16)50m<sup>2</sup>이상

\* 허가대상(예상): 기업농(9,746호), 전업농(24,500호), 준전업농(40,046호)

○ 축산법규, 가축방역, 친환경 등 축산종사자 교육 ('13년 114천명)

\*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축산대학, 지역축협, 시군기술센터 등에서 실시 (축발기금)

□ (차량등록제) 구제역·AI 등을 예방·신속 차단을 위한 축산시설 출입차량 정보관리 “축산차량등록제” 지속추진 【참고12: 추진현황】

○ 축산시설 방문차량(사료·원유·동물약품·가축분뇨운반차량 등)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에 차량등록 및 출입정보 무선인식장치 장착

○ 주기적 방문차량 등록완료, 기타 차량은 홍보·계도로 등록 유도

\* 총 6만5천대 중 사료·원유 등 주기방문차량 19천대, 기타차량 50천대 중 18천대 완료

○ 참고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시행 (대상: 약 1,400명, 의무교육 이수)

□ (이력제) 가축출생, 이동 등을 관리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소에서 돼지까지 확대 【참고13: 추진계획】

○ 구제역 예방접종, 역학조사 거래내역 확인 등에 이력관리시스템 활용

○ '13년 상반기 중 법적 근거 마련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13.12)

- 돼지 이력제 농장, 도축장, 판매장 시범사업 추진 ('12.10~'13.1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돼지이력제 근거 마련

□ (친 환 경) 가축질병 발생 여건 최소화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개편 추진

-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지정농가(HACCP)에 대해 직불제 지불로 친환경 축산 확산 촉진 【참고14: 추진현황】

\* 친환경축산물 인정제: 항생제, 호르몬제 등을 사료에 미사용, 100%유기사료 사용여부, 사양관리 등 관리정도에 따라 “유기”와 “무항생제”로 구분 인증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현행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추진('14년)

\* (현행) 한육우, 젓소(우유), 돼지, 육계(토종닭 포함), 산란계, 오리, 오리알 (추가) 메추리, 산양, 사슴 (3종)

□ (동물복지) 구제역 발생 등으로 증가된 동물건강·복지 사회적  
관심에 부응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추진

-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 고려, 연차도입 【참고15: 추진현황】

\* 산란계('12) - 돼지('13) - 육계('14) - 한육우, 젓소('15)

\* 현재 37개 산란계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13.2월말)

- '13년 7월부터 돼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

- 참고로 반려동물 등록제 전국 시행 (상반기 계도, 하반기 단속실시)

\* 전국 의무시행하되 도서·오지·벽지 등 제외, 228개 시군구 중 142개 시행(62%)

□ (처 방 제)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하여 국민건강 및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해 수의사 처방·판매제 도입

-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주의 동물용 의약품”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정마련 ('13년 8월 시행)

\* 수의사 처방제 관련 근거법령 :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 수의사 처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구축('13.1월~7월) 및 홍보·교육 실시 【참고16: 추진현황】

## ◇ 선진제도·시스템 구축 추진 중 보완사항 발굴·개선 조치

### □ (질병등급제) 농장별 질병등급제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맞춰 평가항목·실시시기 조정 등 보완 후 추진

- 시범사업(‘12.11~’13.2) 결과, 평가항목 및 시행시기 조정 필요성 대두  
\* 시범사업 : 종축시설 95호, 일반농가 405호 【참고17: 방역·등급표지판】
- 생산자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조정방안(‘13 상반기) 마련후 시행  
\* 희망 농가·종축시설에 대해서는 질병등급제 지속 실시

#### < 참고 > 지자체·검역본부 질병등급제 관련 주요 건의사항

- ① 3년간 질병 비발생 등 평가항목 입증여건 미비 (추가검사시 인력·비용증대)
- ② 기존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과 중복되는 현상 발생
- ③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으로 평가 투입인력 부족 (1평가당 1~2일 소요)
- ④ 농가의 기본적인 차단방역 표준화 정착이후 도입 필요

### □ (위기대응) 구제역·AI 긴급행동지침(SOP) 가상현장적용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지속 개선 【참고10: 긴급행동지침(SOP) 요약】

- 전국 일시이동제한(Stand-still) 세부 시행방안 및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통한 긴급행동지침(SOP)개선  
\* 일시이동제한 : 원칙·발동요건에 따른 세부절차 및 시행계획 수립
- 긴급 상황 대비, 자원 비축·동원·배분 세부 계획 수립  
\* 권역별 소독약, 방역장비·물품 보관창고 구축 계획(안) 마련  
\* (예) 미국 : 자원비축(NVS)·24시간 동원계획 (24hour push pack)

### □ (IT시스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중 미흡 사항 개선

- 지자체에서 일부 항목(예; 질병진단결과) 전산입력 미흡으로 활용 한계  
\* KAHIS : 예방, 예찰, 진단, 통제, 역학조사, 사후관리, 백신접종 7종 시스템 운영
- 전산입력으로 공문서 대체 및 불편사항 해소 등 개선방안 마련



## 다 민간방역 활성화 등 인프라 확충

- ◇ 생산자단체, 농협·방역지원본부 등 민간방역 활성화
- ◇ 축종 및 사육규모에 맞게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

### □ (민간방역) 생산자단체, 농협·방역지원본부, 산업동물 전문수의사 육성을 통한 민간방역 활성화

- 단계적으로 방역지원본부 1시·군 1가축방역사(205명→235명)추진
- 지자체의 민간부문 연계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연1회이상 운영점검)
-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을 통한 전문수의사 및 긴급방역요원 육성
  - ‘14년 서울대학교 평창그린바이오 단지 설립 운영 (매년 1,100명 교육예정)
  - 중장기적으로 개업수의사, 수의과대학생 등 유사시 활용 긴급방역요원 육성

- \* (미국) '01년부터 긴급대응예비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NAHERC)
- \* (일본) 전국농업공제산업회를 통한 산업동물 전문수의사 등 육성

### □ (방역기관) 구제역·AI 방역 집행기관인 지자체 중심으로 축종·사육규모에 맞게 조직·인력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보

- 구제역·AI 특별방역, 차량등록제 등 신규사업 인력충원 지속요구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방역기관 적정역량 특히, 인력·재정 중요성 강조
-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부터 인력 확충 추진 (안행부 협의 추진)
  - \* (예) 1인당 축산농가 관리 전국평균(4.1천호)<sup>1)</sup> 기준으로 미달 지자체 총원

- \* ‘10년 일본 구제역 발생지역 지자체(미야자키현) 농가호수 대비 전국 1인당 최저방역 인력으로 관리미흡 <구제역 대책 검증위원회 보고서>

- 단계적으로 중앙방역기관 질병방역센터의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
  - \* (현행) 5개소(서울, 용인, 영남, 호남) → (확대) 9개소 (1도 1센터 체계)

1) 산출근거 : 4,155천호(가축동향 '12.12)/995명(자체조사 '13.2)

## 라 국제 가축방역 협력

- ◇ 중국 AI계기로 한중일 3국의 국제 협력방안 모색
-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OIE와의 협력 관계 구축

- (한중일 협력) 구제역·AI는 국경을 넘나드는 질병이나 지리적  
으로 가까운 3국 공동대응체제로 방역효과 극대화
  - 한중일 농업장관회담('12.4.15)시 “가축방역협력 사무국” 설치키로  
했으나, 각국 내부 사정 등으로 진척 없음
    - \* 3국의 구제역 바이러스 상관성 보여 공동협력을 통한 통제필요
  - 향후 3국 관련 회의시 “가축방역협력 사무국” 실무협의 추진 및  
한중일 가축방역 심포지움 정례화 촉진 【참고18: 사무국 설치계획】
    - \* [1차] 구제역 심포지움('11,일본) → [2차] 구제역 심포지움('12,한국)
- (OIE 관계강화) 국제적으로 OIE가 동물위생규약 설정, 구제역  
등 청정국 지위평가로 강화되는 추세로 협력강화
  - OIE 사무총장 요구 등에 따라 OIE 본부에 전문가 1명 파견
    - \* 일본의 경우 OIE 아태지역사무소 운영 및 OIE본부에 1명 파견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OIE와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파견형태  
에서 국제기구 고용휴직으로 전환 추진 (OIE 고용휴직 수요 기제출)
    - \* 동아시아 회원국간 구제역·AI 공동방역 신탁기금 기여 검토·추진
- (북한 접경관리) '10~'11년 북한 구제역 전국발생(8도,41시군)으로  
큰 피해, 유사시 유입차단을 위한 접경관리 강화·지원
  - 북한 접경지역의 야생동물에 대한 모니터링(혈청검사) 추진
  - 구제역·AI 발생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검토·지원 (통일부 협의추진)
    - \* (과거 사례) '07년 방역장비, 소독약 등 30억 수준 지원

## 마 중장기 가축방역 대책

### ◇ 중장기 가축방역 3개년('14~'16) 종합대책 수립·추진

#### □ 국제기구(OIE) 및 선진국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맞추어 중장기 방역대책 수립·추진 필요

- 국제흐름에 따라 국민건강·환경보호와 연계하여 방역대책 추진

##### 참고① 가축방역 패러다임 전환 사례

- ① OIE : 동물위생·국민건강·환경보호 통합한 One-Health 개념 제시
- ② E U : 공중보건·식품안전을 가축방역의 제1목표로 제시
- ③ 미국 : 2015까지 전략계획으로 원헬스(One-health) 운동 추진

-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중

##### 참고② 주요 선진국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사례

- ▶ 미국 : 동물전염병 전략계획 (2010~2015), 농업부 동식품검사청,
- ▶ E U : 신(新) 동물위생 전략 (2007~201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영국 동물위생·복지전략, 네덜란드 동물위생아젠다, 호주 동물위생전략 등

#### □ 구제역·AI 등 사회적 재난 질병과 함께 결핵·브루셀라·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포괄하여 중장기 대책 수립 ('13년 하반기)

- '10년 구제역·AI 발생이후 선진화 대책으로 상당 성과가 있었으나 구제역·AI 중심으로 다양한 질병을 포괄한 종합대책 수립 한계
- 사전예방 및 국민·소비자 관점을 연계하여 방역제도, 시스템 및 질병별 세부대책 포괄하여 수립

- \* 사전예방, 조기검색·확산방지, 사후관리, 지원관리 방역시스템 구축
- \* 질병별로 ①근절, ②저감화, ③안정화(확산방지)로 세분화하여 대책 수립

## Ⅶ 주요 과제별 추진일정

① 구제역 재발방지	'13년			'14년	'15년
	2/4	3/4	4/4		
<b>①백신접종</b>					
• 중앙기동단속반 운용					
• 분기별 접종실태 조사·점검				필요시	지속점검
• 백신담당 실명제 운영					
• 전국 항체(SP)검사					
<b>②백신공급</b>					
• 계약물량 확보 및 공급					
• 10두분 소량포장 백신공급					
<b>③연구개발·교육홍보</b>					
• 수입백신 검정제도 개선					
• 백신연구센터 등 추진					
• 백신접종법 등 교육홍보	.....	.....	.....	.....	.....
<b>④위험농가 관리</b>					
• 전국 항체(NSP) 검사				필요시	검사
• 농가별 기록관리				잔류농가	관리
<b>⑤국경검역 강화</b>					
• 출입국 소독 등 지속관리					
•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					
<b>⑥초등대응 및 매몰지</b>					
• 신고전화 불시점검					
• 가상방역훈련	.....	.....	.....	.....	.....
• 매몰지 지속관리				3년 경과	관리방안 마련
<b>⑦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b>					
• 전담 T/F 운영					'14년 5월
• 신청서 제출 및 지위획득					지위획득
<b>⑧ 백신금지 청정국 추진(중장기)</b>					
• 사전위험도 평가	14년 백신접종 청정국 안정화 추진				'16년이후
• 백신금지 청정국 추진계획	사전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				'16년이후

② HPAI 재발방지	'13년		'14년	'15년	'16년 ~
	상반기	하반기			
① 상시예찰 및 사전예방					
• 상시예찰 및 조기경보					
• 전통시장 소독강화					
•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필요시 지속검사	
② 가금농장 특별점검					
• 중앙기동점검반 운영					
• SI발생국 방문자 농가에찰					
③ 국경검역 확대					
• 중국 전노선 공항만 검색			중국시 안정화시까지 지속 실시		
• 중국 수출작업장 점검			필요시 수시 점검		
④ 초등대응 역량강화					
• SI 가상방역훈련					
• 축산관계자 방역교육					
⑤ 공동대응체계 구축					
• 공동대응 체계 구축		공동대응 체계 지속 운영			
• 중국시 전담T/F운용			중국시 안정화시까지 지속 실시		
③ 방역 기반 강화	'13년		'14년	'15년	'16년 ~
	상반기	하반기			
① 농가, 지자체 상시방역 체질화					
• 민간방역 활성화 지도/점검					
• 차단방역 매뉴얼 제작·배포	연구용역 및 조사				
② 선진방역제도 조기정착					
• 축산업허가제					
• 축산차량등록제					
• 돼지이력제	시범사업/법령개정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개선					
③ 방역인프라 및 국제협력 등					
• 산업동물연수원 설립·운영	설계/운영방안 준비				
• 한중일 사무국 설치	실무협의 제기 등 예비작업				
• 종장기 가축방역대책 수립					

## 참고자료

1. 구제역·AI 발생 현황 및 재정지출액 ..... 29
2. 구제역·AI 해외(주변국) 발생 동향 ..... 31
3. 철새 이동 경로 ..... 32
4. 구제역 혈청검사(SP·NSP)계획 ..... 33
5. 백신 연구센터 건립 추진계획 ..... 34
6. 구제역 방역 홍보 추진 실적 ..... 35
7. 구제역 위험농가(NSP 검출) 관리 세부 계획 ..... 36
8.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조건 ..... 37
9. AI 상시 예찰계획 ..... 39
10. 긴급행동지침(SOP) 요약 ..... 40
11. 축산업 허가제 추진계획 요약 ..... 46
12. 차량등록제 추진현황 ..... 47
13. 돼지이력제 추진계획 ..... 48
14.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 49
1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 50
16.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 ..... 51
17. 방역·등급 표지판 ..... 52
18. 가축방역사무국 설치 계획(안) ..... 53

# 참고 1

## 국내 구제역 발생 및 재정지출액

### □ 구제역 발생 현황

구 분	'00년	'02년	'10년(포천)	'10년(강화)	'10/11년(안동)
발 생	○ 3.24~4.15 (23일간) ○ 건수 : 15건 (소 15)  ※3개도 6개 시·군 -경기 파주 화성· 용인 충남 홍성 보령, 충북 충주	○ 5.2~6.23 (53일간) ○ 16 건 (소 1, 돼지 15)  ※2개도 4개 시·군 -경기 안성·용인· 평택, 충북 진천	○ 1.2~1.29 (28일간) ○ 건수 : 6건 (소 6)  ※1개도 2개 시·군 -경기 포천·연천	○ 4.8~5.6 (29일간) ○ 11 건 (소 7, 돼지 4)  ※4개 시도 4개 시·군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	○ '10.11.28 ~ '11.4.21 ○ 건수 : 153건 (소 97, 돼지 55, 염소 1)  ※1개 시도 7개 시·군 -부산 1, 대구 1, 인천 3, 울산 1, 대전 1, 경기 19, 강원 13, 충북 8, 충남 10, 경북 16, 경남 2
발생인정 (추 정)	○ 수입건초 ○ 해외여행객 (신발 휴대선물)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 농장주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방 역 치	○ 살처분 182농가 2,216두  *소 2,021두, 돼지 63, 염소·사슴 132  ○ 예방접종 (Ring 백신)	○ 살처분 162농가 160,155두  *소 1,372두, 돼지 158,708, 염소·사슴 75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55농가, 5,956두  *소 2,905두, 돼지 2,953, 염소·사슴 98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395농가 49,874두  *소 10,858두, 돼지 38,274, 염소·사슴 742  ○ 예방접종 배제	○ 살처분 624농가 3,479,962두  *소 150,864두, 돼지 3,318,298, 염소· 사슴 10,800  ○ 예방접종 실시 (전국 백신)
국 내 식	○ 예방접종 중단 후 1년  ※청정국 회복 : '01.8.31	○ 이동제한 해제 (8.14) 후  ※청정국 회복 : '02.11.29	○ 이동제한 해제 (3.23) 후	○ 이동제한 해제 (6.19일) 후  ※청정국 회복 : '10.9.27	○ 최종 발생 일: '11.4.21(경북 영천)  ※백신접종 중이기 때문에 종식 선언은 하지 않음
재 정 지 출액	○ 2,725억원 -보상금 71 -수매 2,428 -소독 등 202 -생활·경영안정· 입식자금 등 23.7	○ 1,058억원 -보상금 531 -수매 337 -소독 등 154 -생활·경영안정· 입식자금 등 35.5	○ 272억원 -보상금 93 -수매 133 -소독 등 31 -생활·경영안정· 입식자금 등 5 -행안부교부금 10	○ 1,040억원 -보상금 637 -수매 95 -소독 등 231 -생활·경영안정· 입식자금 등 52 -행안부교부금 25	○ 27,383억원* -보상금 18,337 -수매 1,563 -소독 등 1,192 -생활·경영안정· 입식자금 등 516 -행안부교부금 1,340 -환경부상수도 4435  * AI 매몰 예산 포함

□ AI 발생 현황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시기	겨울철 (03.12.10~'04.3.20) (102일간)	겨울철 ('06.11.22~'07.3.6) (104일간)	봄철 ('08.4.1~5.12) (42일간)	겨울철 ('10.12.29~5.16) (139일간)
지역 및 전수	10개 시·군 19건 (닭 10, 오리 9)	5개 시·군 7건 (닭4 오리2 메추리1)	19개 시·군·구 33건 (닭 21, 오리 6, 닭·오리 복합 6)	25개 시·군 53건 (닭18, 오리33, 메추리1, 꿩1)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92농가 5,285천마리 살처분</li> <li>• '04.5.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li> <li>• '04.9.21 청정국 선언(6개월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60농가 2,800천마리 살처분</li> <li>• '07.5.2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li> <li>• '07.6.18 청정국 선언(3개월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호 10,204천마리 살처분</li> <li>• '08.6.29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li> <li>• '08.8.15 청정국 선언(3개월 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6호 6,473천마리 살처분</li> <li>• '11.7.3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해제</li> <li>• '11.9.5 청정국 선언(3개월 후)</li> </ul>
혈청형	H5N1 (유전형2.5)	H5N1 (유전형2.2)	H5N1 (유전형2.3.2)	H5N1 (유전형2.3.2)
유입 추정	야생조류	야생조류	야생조류	야생조류
재정 소요액	1,531억원	582억원	3,070억원	822억원



## 참고 2

## 구제역·AI 해외발생 동향

### □ '12년 이후 해외 구제역 발생현황(12개국)

○ 나미비아('12.1.5)	○ 중국('12.2.19, 9.6, 11.19, 12.12, '13.1.4,
○ 대만('12.1.19, 1.26~2.9, 2.16~3.30,	2.18, 2.19, 3.18)
5.1, 9.24~10.3, 11.23)	○ 잠비아('12.1.24)
○ 리비아('12.1.2~4.30)	○ 러시아('12.2.26~3.4, '13.3.18)
○ 카자흐스탄('12.2.15~6.30)	○ 이집트('12.2.18~5.15)
○ 이스라엘('12.3.18~3.26)	○ 팔레스타인('12.4.9)
○ 남아공('12.4.4~4.30)	○ 보츠나와('12.5.23)

\* 출처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상시발생국 제외

### □ '12년 이후 해외 HPAI 발생현황(14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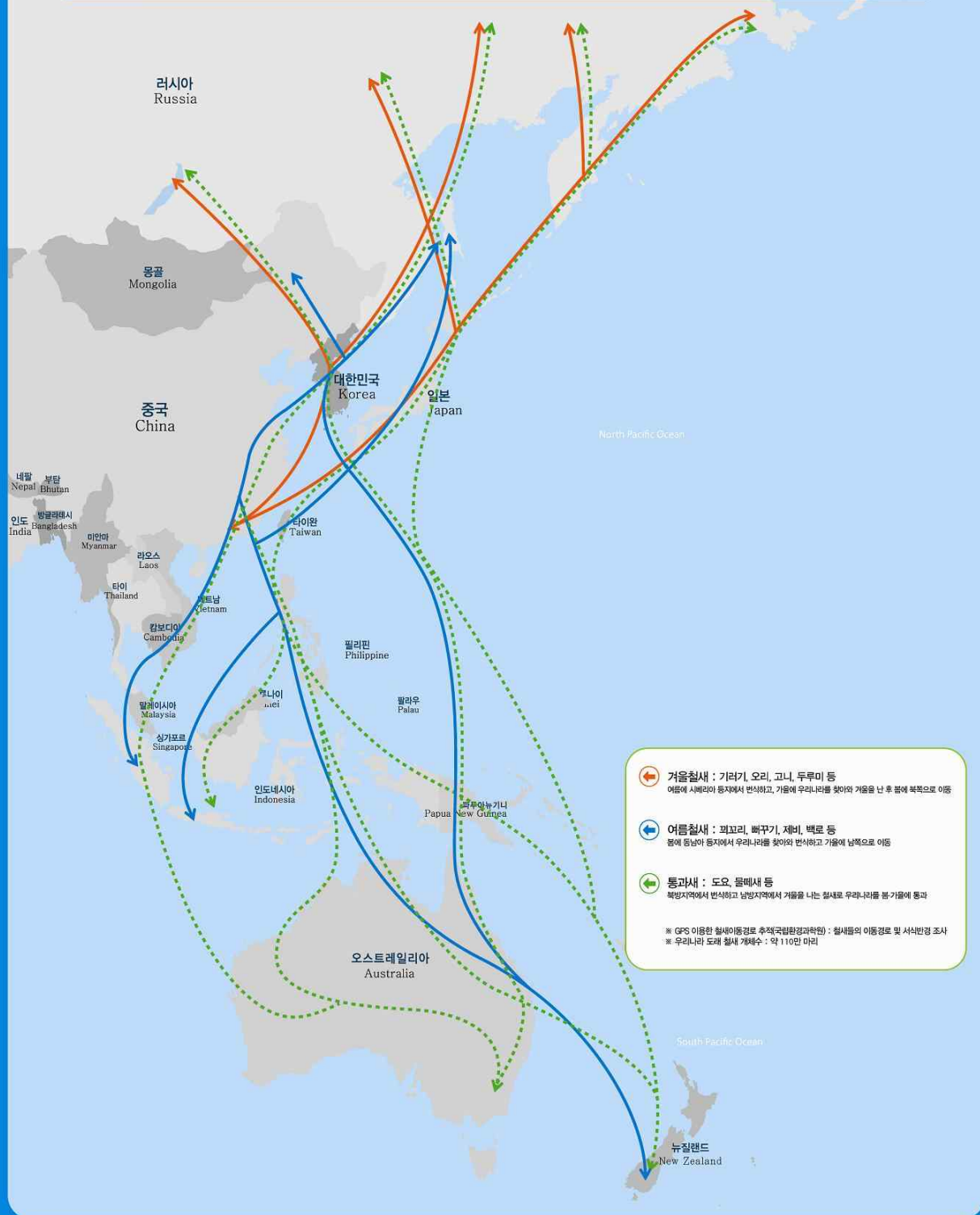
가금류 사육농가 발생 (14개국)	야생조류 발생(5개국)
○ 인도('12.1.3~4.18, 10.12, '13.2.27)	○ 홍콩('12.1.1~6.29, '13.1.25)
○ 부탄('12.1.8~3.27, 10.2, 12.19, '13.1.14)	○ 인도('12.1.3~1.10)
○ 방글라데시('12.1.8~4.4, 10.23, 12.17)	○ 네팔('12.1.17)
○ 홍콩('12.1.20~6.25)	○ 멕시코('12.8.6, 9.28,)
○ 남아프리카공화국('12.1.13~6.11)	○ 덴마크('12.12.14)
○ 베트남('12.1.19~9.3)	
○ 네팔('12.1.18~3.16, 8.27, 10.6, 12.11~12.31,	
'13.1.2, 1.8, 2.4, 2.5)	
○ 미얀마('12.2.20~3.5)	
○ 대만('12.2.7~7.7, 11.17)	
○ 이스라엘('12.3.7)	
○ 중국('12.3.27~9.11)	
○ 캄보디아('12.5.27, '13.1.9-2.20)	
○ 멕시코('12.6.13~8.13, '13.1.3~1.5, 1.12,	
2.12, 2.16~2.28)	
○ 호주('12.11.9)	

\* 출처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 참고 3

## 철새 이동 경로

### 야생철새(겨울, 여름)등 이동경로(fly-way)



- 겨울철새 : 기러기, 오리, 고니, 두루미 등  
 여름에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가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난 후 봄에 북쪽으로 이동
- 여름철새 : 피코리, 비꾸기, 제비, 백로 등  
 봄에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하고 가을에 남쪽으로 이동
- 통과새 : 도요, 물떼새 등  
 북방지역에서 번식하고 남방지역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로 우리나라를 봄 가을에 통과

※ GPS 이용한 철새이동경로 추적(국립환경과학원) : 철새들의 이동경로 및 서식환경 조사  
 ※ 우리나라 도래 철새 개체수 : 약 110만 마리

## 참고 4

## 구제역 혈청검사 (SP 및 NSP) 계획

□ (혈청검사) 구제역 감염축을 조기에 검색하고, 농가의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 항체 형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NSP 검사	138,144두	158,957	81,142	-야외바이러스 감염여부 검사
SP 검사	31,200두	86,508	97,021	-백신항체 형성 여부 검사
계	169,344두	245,465	178,163	

\* NSP항체(비구조단백질 non-structural protein) : 구제역 야외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주 경과 후,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

\* SP항체 : 백신접종에 의해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

□ 구제역 혈청 예찰 계획

구 분		2012년	2013년	증감	비고	
NSP ELISA	통계예찰	67,500	32,256	-35,244	농장내 검사두수 축소	
	목 적 예 찰	부분매몰농가	44,348	0	-44,348	NSP양성축 검사대체
		NSP양성축	0	787	787	항체 지속기간 조사
		의뢰검사(시도)	13,572	12,656	-916	시도 자체계획물량
		의뢰검사(본부)	1,400	1,600	200	종축장 검사 증가
		종돈장	32,137	33,276	1,139	시도 자체계획물량
		야생동물	0	567	567	시도 자체계획 및 검역검사본부 물량
소 계	158,957	81,142	-77,815			
SP ELISA	백신항체(시도)	82,188	92,701	10,513	돼지검사 확대	
	백신항체(본부)	4,320	4,320	0		
	소 계	86,508	97,021	10,513		
합계		245,465	178,163	-67,302		

## 참고 5

# 구제역 백신연구센터 설립 추진 계획

### □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합 계	'13년	'14년(안)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01)	441	441	-
	실시설계비(02)	662	662	-
	시설비(03)	23,698	2,000	21,698
	감리비(04)	1,247	-	1,247
	시설부대비(05)	55	-	55
합 계		26,103	3,103	23,000

### □ 사업규모 및 사업지역

사업규모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3,300㎡	1,000평	6,294㎡	1,904평	
사업지역	경북 김천시 남면·농소면 일대 (농림축산검역본부 혁신도시 이전부지 내)				

### 《2013년 추진 일정》

추진일정	내용	비고 (협의기관)
1월	설계 맞춤형서비스 약정체결 및 협의	조달청
3월	설계계약요청 및 입찰공고	조달청
4월	설계용역 계약체결	조달청
5월~10월	설계용역 추진	설계업체
11월	설계검사, 공사발주 협의, 시설공사 계약요청 및 입찰공고	조달청
12월	시공업체 계약체결 및 착공	시공업체

## 참고 6

## 구제역 방역 홍보·교육 실적

### □ 구제역 방역 홍보 리후렛 제작·배포 현황('11년 이후)

연번	제작시기	내 용	배부량
1	'11.1.8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	20만부
2	'11.6.17	구제역 예방접종 철저	20만부
3	'11.8.31	구제역 혼합백신 공급안내 및 접종 독려	20만부
4	'11.12.1	구제역 재발방지	20만부
5	'12.4.20	구제역 백신접종 및 방역일지	20만부
6	'12.7.3	하절기 가축질병 관리방안	20만부
7	'12.10.2	구제역 방역 철저	20만부
8	'13.1.18	올바른 예방접종 요령	20만부

### □ 구제역 방역관련 전문 교육 신설

- 구제역·AI 현장 방역 대응(농식품공무원교육원, 2회/연, '12~)

### □ 축산농가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 우제류 사육농가(매주 약 20,000호) 주 1회('11.7월~)
- 내용 : 구제역 예방접종 독려, 주의사항 안내 및 소독철저 당부 등

### □ 전화예찰요원을 통한 정책 홍보 : 87건, 27,037호

연도	홍보건수	농가수	비고
2011	31	13,838	예찰요원 800명
2012	56	13,199	예찰요원 500명

### □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동영상 제작·배포('11.12.22,

검역검사본부) \* 시·도, 유관기관별 홈페이지에 동영상 게재·홍보

## 참고 7 구제역 위험농가 (NSP 검출) 관리 세부 계획

①	최초 양성 확인	검역검사본부 통계예찰, 시·도검사 일제검사 등
	전체 임상검사	농장내 전두수 임상검사, 증상 발현 및 항원검출시 방역조치
	1차 확대검사	① 소·사슴·염소 : 전 두수 NSP검사 ② 돼지 : 동거축 16두 NSP검사 ③ NSP양성축 및 환경 항원검사 ※ 양성축 : 개체표시, 이동제한, 2차 검사시까지 백신접종금지
②	2차 확대검사 (1차후 4주 경과)	① 소·사슴·염소 : 1차 확대검사 NSP 양성축 + 동거축 16두 ② 돼지 : 1차 확대검사 NSP 양성축 + 동거축 16두 ③ NSP 양성축 및 환경 항원검사
③	음성 전환축 확인 검사 (2차후 4주 경과)	① 음성 전환축(2차검사에서 음성개체)에 대한 NSP 검사 ② 음성 전환축의 동거축 검사 (16두) ③ 음성 전환축 및 환경 항원검사 ※ NSP 및 항원검사 음성시 개체표시관리후 이동제한해제
* 농장내에서 NSP 양성축이 증가하고 항원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전두수 검사 및 추적 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항원 검출시는 즉각 방역조치) * 이동제한기간 중 농장이동 금지, 도축장 출하허용, 조기도태장려금 지원		

※ 위험농가(NSP검출농가)는 농가별 관리기록 카드 작성·운영

## 참고 8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조건

### 1. OIE 구제역“백신접종 청정국”지위획득 조건

<Terrestrial Code Chapter 8.5, Article 8.5.3>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백신을 추진함에 따라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함

#### ① 지난 24개월 동안 발생 되지 않아야 함

\* 발생 : 임상증상이 나타나거나 바이러스 검출

#### ② 지난 12개월 동안 바이러스 부재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

- 구제역 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 ; NSP) 항체 검출에 기초한 혈청학적 예찰에서 바이러스가 순환되지 않았다고 입증

\* 바이러스 순환 : 임상증상, 혈청학적검사, 바이러스분리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전파

#### ③ 백신접종 및 추가적인 예찰 실시

- 예방접종 축종의 80% 이상에서 방어면역 구비

\* 방어면역 수준은 감수성 축군의 규모, 축종별 구성 및 밀집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④ 정기 및 신속한 동물 질병 보고 기록 보유

#### ⑤ 조기 검출, 예방, 통제를 위한 규제 조치 이행

#### ⑥ 사용된 백신은 OIE 기준에 부합, 현재 순환중인 바이러스 유형(Strain)에 적합

#### ※ OIE 요구 구제역 예찰정책

○ 수용가능한 통계적 신뢰도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순환이 없음을 일정하게 입증하는 예찰 활동 요구

○ 임상, 바이러스, 혈청학적 예찰 활동 요구

## 2.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및 회복 신청 요건표

구 분	신청요건	신청가능시점	신청절차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u>신규</u> 신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년간 구제역 비발생</li> <li>·1년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li> <li>·방어면역력 80%이상 유지</li> </ul> * 제출서류 : i) 구제역 바이러스 예찰, ii) 구제역 조기 검색 등을 위한 정기적인 방역조치, iii) 정기적인 백신접종, iv) OIE 규정에 따른 백신 사용 등	비발생 2년, 1년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요건 충족시	지위신청 →OIE 구제역 Ad hoc group →OIE과학위원회 →OIE 총회에서 지위 획득결정 (홈페이지등재)
예방접종 미실시 청정국 <u>지위 신규</u> <u>신청시</u> (접종중단 후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간 구제역 비발생</li> <li>·1년간 바이러스 감염증거 없음</li> <li>·1년간 예방접종 미실시</li> <li>·예방접종 중단후 예방접종가축 도입하지 않음</li> </ul>	예방접종 중단 1년 후	→OIE 총회에서 지위 획득결정 (홈페이지등재)
예방접종을 실시 하지 않는 청정국 <u>지위 회복</u>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처분정책+</li> <li>·혈청학적예찰</li> </ul>	마지막 발생 3개월 후	지위회복신청 →OIE과학위원회 →Ad hoc group →OIE과학위원회 →지위회복결정 (홈페이지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처분정책+</li> <li>·예방접종축 전두수 도축+</li> <li>·혈청학적예찰</li> </ul>	예방접종축 전두수 도축 3개월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처분정책+</li> <li>·긴급예방접종+</li> <li>·혈청학적예찰+</li> <li>·예방접종축에 대한 감별진단</li> </ul>	마지막 발생 또는 예방접종 6개월 후	



**참고 9**

**AI 상시예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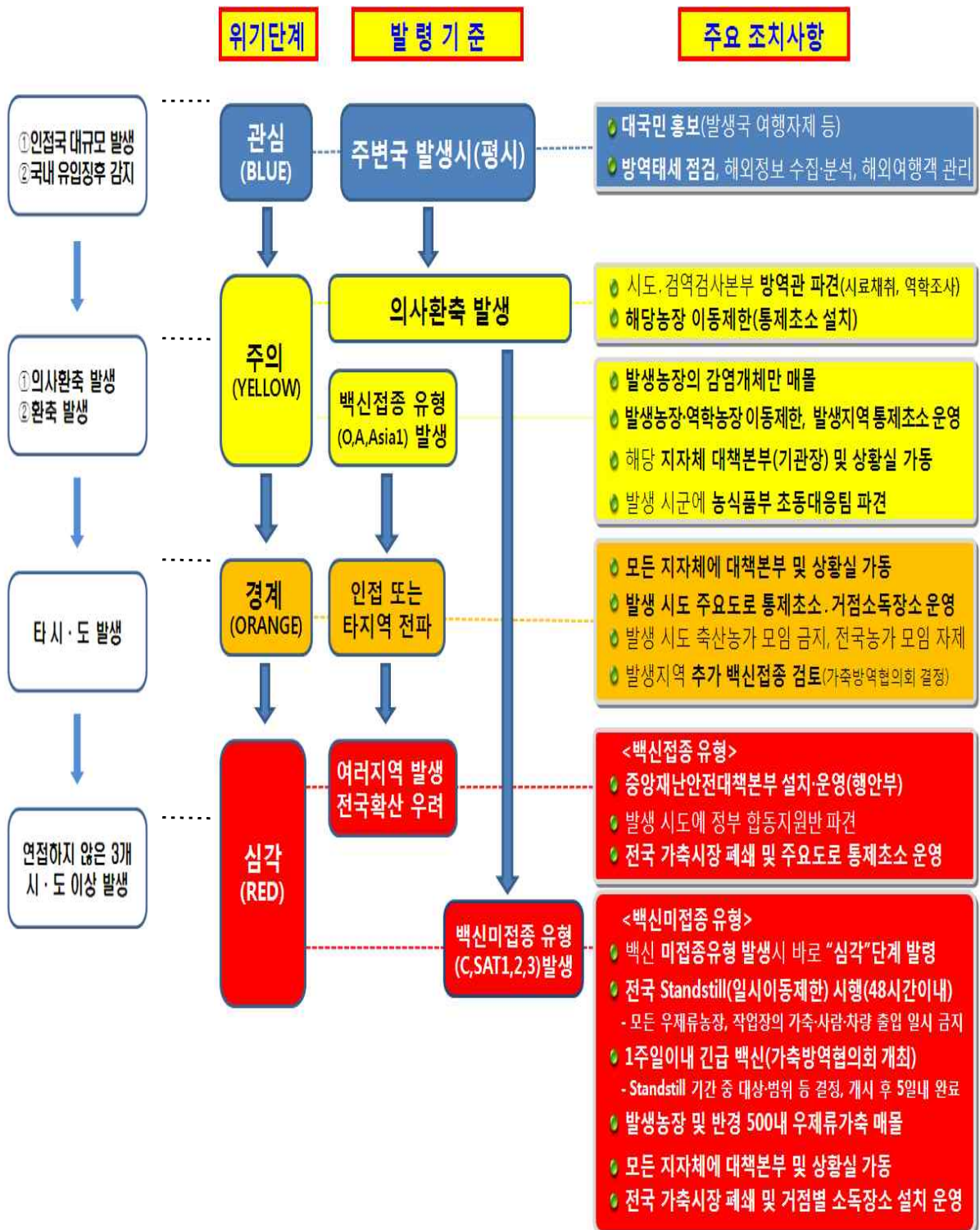
구 분	'13년 예찰항목	비고
임 상 검 사	집중관리지역(가금사육농가)	
	종오리농가(105호)	
	종계장 농가(330호)	
모니터링 검 사	종오리 검사 (146,160건_)	
	육용오리검사 (20,072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검사 (6,980건)	
	야생조류 포획검사 (1,000건)	환경부 협의 결과
	전통시장 가금·포유류 검사 (2,790건)	
	전통시장, 가금판매농가 (640건)	
	기타가금류 검사 (1,824건)	
	저병원성 AI 검사 (원종계,종계,산란계,토종닭) (51,540건)	
	계 (229,906건)	
HPAI 발생시 검 사	수입사료검사	추진계획 별도수립
	관상/전시용 조류검사	
	친환경이용 오리검사	

# 참고 10 긴급행동지침(SOP) 요약

## □ 구제역

<개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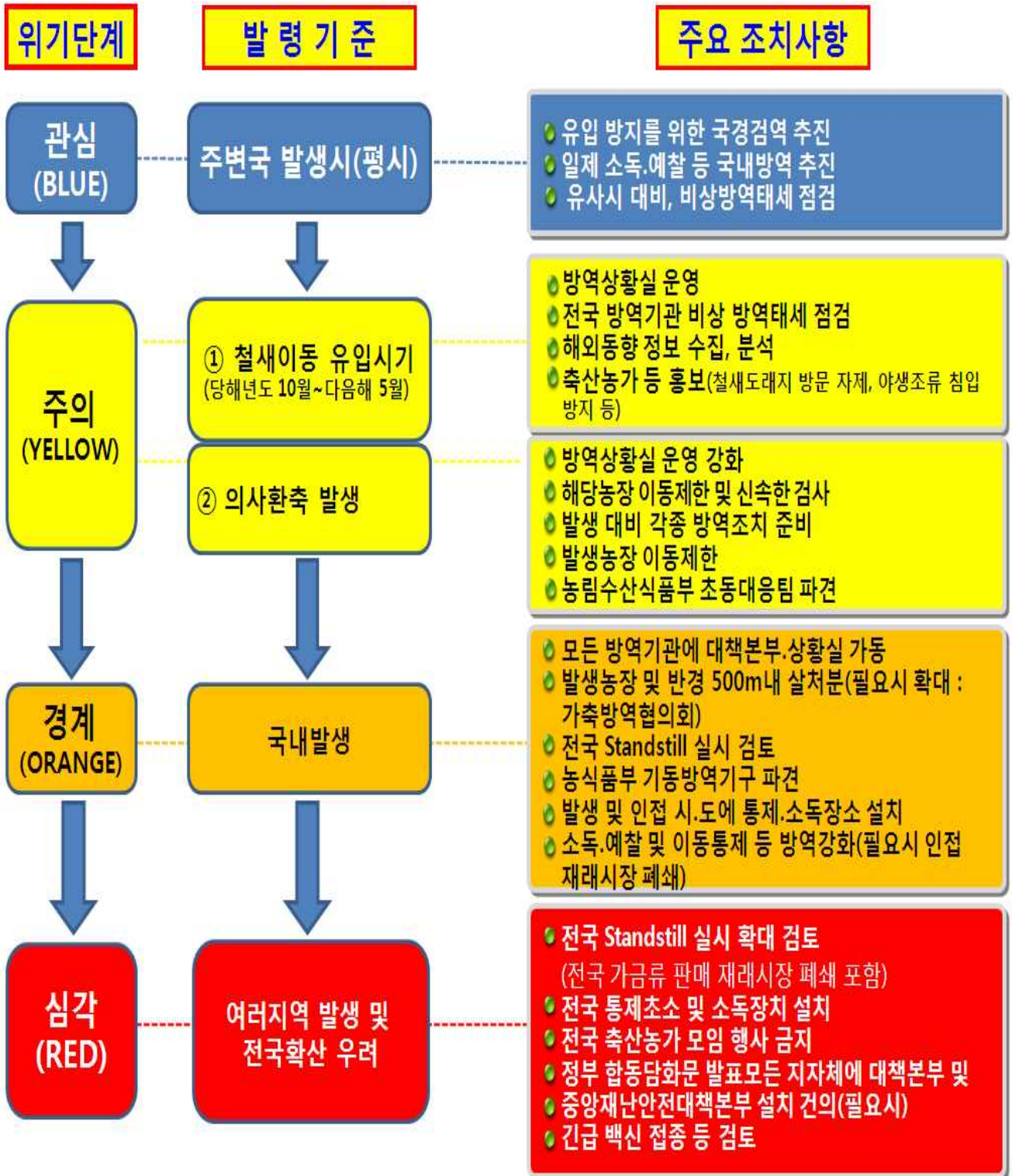
<개선후, '11.7월>



## 구제역 발생시 관계부처 협조사항

부 처	협 조 사 항
대통령실	○ 위기정보 상황 모니터링 및 종합관리
국무총리실	○ 구제역 방역 및 축산물 수급안정 관련 부처간 협조조정
기획재정부	○ 구제역 방역비, 가축 구매자금 등 농가지원 소요 예산 지원
외교부 국가정보원	○ 국제동향 등 정보 입수 지원 ○ 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파악 협조
법무부	○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제공 등 지원 협조
국방부	○ 현장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 ○ 발생지역 내 군사훈련 및 예비군 훈련 자제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등 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 시달(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등) ○ 지방자치단체 협조(마을 방송을 통해 축산농가 준수사항 홍보 등) ○ 위기관리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자제 홍보 협조(TV 자막광고 등) ○ 언론기관에 구제역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송 자제
환경부	○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 관리
국토교통부	○ 공·항만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홍보 (공항만 전광판, 기내방송 등 활용)
경찰청	○ 현장 방역인력 지원(이동통제 초소 등 인력지원) ○ 역학조사시 지역경찰관 투입 협조(필요시)
관세청, 해양경찰청	○ 공항·항만을 통한 가축·축산물의 밀반입 단속·감시 강화

## □ 조류인플루엔자(HPAI)



# HPAI 발생시 관계부처 협조사항

구 분	기 능	비 고
대통령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정보·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li> <li>○ 경보관련 협의</li> </ul>	
중앙안전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li> </ul>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관리활동 관장, 협조·지원체계 가동</li> <li>○ 위기발생시 자원통합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관기관이 건의하는 경우에 중앙본부장이 검토 후 구성·운영</li> <li>② ‘①’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앙본부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성·운영</li> </ul> </li> </ul>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가축방역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 방역대책 계획 수립 및 시달</li> <li>- 종합적 가축질병 위기대응 대책 추진</li> <li>-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정책 결정 및 시행</li> </ul> </li> <li>○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 방역 대책 관련 정책 자문</li> </ul> </li> <li>○ 시·도 방역 대책본부 운영 총괄</li> <li>○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li> <li>○ 중앙안전대책본부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후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행정안전부(재난대책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li> </ul> </li> </ul>	
외교부 국가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가축질병 동향 및 정보 수집·전파 지원</li> <li>○ 주요 교역국의 가축질병 정보 수집 지원</li> <li>○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주의 당부 등 예방·홍보 협조</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발생지역 여행자제 홍보</li> <li>○ 소비자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 내·외국인의 출입국 기록 제공 등 출입국자 추적관리 지원 협조</li> </ul>	



구 분	기 능	비 고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방역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과 동시에 이동통제 인력 등 투입 협조 (필요시 가축 매몰 지원)</li> </ul> </li> <li>○ 발생지역 내 군사훈련 및 예비군훈련 자제</li> </ul>	
<u>안전행정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행정·예산 등 방역활동 지원</li> <li>○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지원</li> <li>○ 지방자치단체 협조 강화(이장단 마을방송을 통해 축산농가 준수사항 홍보 등)</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처분 매몰지 환경오염방지 대책 마련·시행</li> <li>○ 살처분 매몰지 환경관리 기술 지원</li> </ul>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및 방역 협조</li> <li>○ 방역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예방물품 지원 및 모니터링</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염·위험·경계지역 이동통제초소 인력 지원 (발생과 동시에 투입)</li> <li>○ 역학조사시 지역경찰관 투입 협조(필요시)</li> </ul>	
관세청 해양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공항·항만 등 검역활동 강화 협조</li> <li>○ 국내입항 무역선, 외항선, 원양어선 등 선원 및 승객에 대한 방역조치 협조</li> </ul>	
<u>농림축산검역본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질병 정밀검사 실시 및 기술지원</li> <li>○ 중앙역학조사반 운영 및 가축방역관 파견</li> <li>○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전국 공항·항만 등 검역 활동</li> <li>○ 해외여행객에 대한 홍보 활동</li> </ul>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보유가축 예찰 및 현장 방역활동</li> </ul>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 야생조류

- 고병원성 AI(예: H5N1, H7N1 등)발생시
  - » 시료채취지점부터 **반경 10km** 이내 가금류 출하 정지
    - 닭 : 7일 (임상검사 이상없을 시 이동제한 해제)
    - 오리 : 14일 (혈청검사 이상없을 시 이동제한 해제)
- H7N9형 검출시: **고병원성 AI와 동일 조치**

## 가금류

- 고병원성 AI 검출시
  - » 발생지 및 오염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 살처분**

※ 방역지대 설정  
 500m 이내 : **오염지역**  
 3km 이내 : **위험지역**  
 10km 이내 : **경계지역**



- H5/H7형 AI 검출시: 해당 농장 가금류 **살처분**
- H7N9형 AI 검출시
  - » 해당 농장 가금류 **살처분** 및 **10k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 가금출하 정지

※ 저병원성 발생시 방역조치: 소독 및 임상예찰 강화

# 참고 11

## 축산업허가제 추진계획 요약

연도	축종	대상규모	호수 (%)	합계	두수 (%)
2013년 (기업규모: 전업×2)	한육우	100두	5,533호 (3.6)	9,746 (5.8)	998천두 (31.8)
	젓소	100두	1,055호 (17.4)		141천두 (33.8)
	돼지	2천두	1,484호 (23.2)		6,646천두 (66.9)
	산란계	3만수	554호 (41.9)		50,417천수 (82.2)
	육계	5만수	539호 (34.0)		39,464천수 (57.6)
	오리	1만수	581호 (59.0)		9,918천수 (78.6)
2014년 (전업규모)	한육우	50두	15,008호 (9.8)	24,500 (14.5)	1,649천두 (52.5)
	젓소	50두	3,961호 (65.3)		349천두 (83.7)
	돼지	1천두	3,001호 (46.9)		8,829천두 (88.8)
	산란계	3만수	554호 (41.9)		50,417천수 (82.2)
	육계	3만수	1,069호 (67.4)		59,619천수 (87.0)
	오리	5천수	907호 (92.2)		12,354천수 (98.0)
2015년 (준전업 규모)	한육우	30두	27,485호 (18.0)	40,046 (23.7)	2,126천두 (67.6)
	젓소	30두	5,324호 (87.7)		403천두 (96.6)
	돼지	500두	4,178호 (65.2)		9,723천두 (97.8)
	산란계	2만수	766호 (58.0)		55,513천수 (90.5)
	육계	2만수	1,331호 (84.0)		66,014천수 (96.3)
	오리	3천수	962호 (97.8)		12,561천수 (99.6)
2016년 (소규모: 사육면적 50m <sup>2</sup> 이상)	한육우	7두	109,683호 (71.9)	121,559 (72.0)	2,971천두 (94.5)
	젓소	7두	2,971호 (48.9)		416천두 (99.8)
	돼지	60두	5,016호 (78.3)		9,917천두 (99.8)
	산란계	1천수	1,321호 (100)		61,326천수 (100)
	육계	1천수	1,585호 (100)		68,540천수 (100)
	오리	160수	984호 (100)		12,611천수 (100)

	합계	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농가수(호)	168,920	152,556	6,070	6,404	1,321	1,585	984
사육두수(천두)	-	3,143	417	9,937	61,326	68,540	12,611



## 참고 12

## 축산차량등록제 추진 현황

□ (목 적)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GPS장치를 장착하여 이동정보를 수집·분석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

□ (등록대상)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차량유형		차량수(대)	차량유형	차량수(대)
운반 차량	가축	4,500	진료	1,137
	사료	3,300	인공수정	765
	왕겨퇴비	200	축산업컨설팅	2,414
	가축분뇨	537	방역·시료채취	704
	원유	725	기계수리	140
	동물약품	578	농장 보유	50,000
합계(추정)		65,000대		

\* 등록대상차량유형 등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 → 등록증 교부

○ 차량등록제 근거로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개정('12.8)

□ (추진현황) 차량운전자 교육, 홍보 및 등록 추진

○ 등록대상 차량운전자 교육실시(30,574명) 및 홍보물 배포(15만부)





○ 등록대수(4.28기준) : 36,860대 (주기방문 : 18,545 기타차량 : 18,315)

○ 미등록차량 과태료 부과 및 출입통제, 지자체의 행정지도 및 독려

## 참고 13

## 돼지 이력제 추진계획

- (시범사업) 본 사업에 앞서 12년부터 '13년말까지 46개 브랜드, 975농가(전체사육농가의 15%) 실시 중
- (법령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가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13년)

업무단계		주요업무
<b>사육</b>		<p style="text-align: center;"><b>- 사육현황 및 이동신고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참여농장에 “농장식별번호” 부여</li> <li>○ 돼지의 소유자는 사육현황(월1회) 및 돼지의 이동시 이동내역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열병·구제역예방접종확인서에 농장식별번호 기재후 이동 및 도축</li> </ul> </li> </ul>
<b>도축</b>		<p style="text-align: center;"><b>- 돼지 도축 후 도체에 이력번호 표시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경영자는 돼지도축 후 이력번호를 도체에 부착하여 도축장 밖으로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체 반출내역 이력관리시스템 신고</li> </ul> </li> </ul>
<b>포장처리</b>		<p style="text-align: center;"><b>- 포장처리 후 부분육마다 이력번호 표시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한 후 모든 부분육마다 도체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이력관리시스템 신고</li> </ul> </li> </ul>
<b>판매</b>		<p style="text-align: center;"><b>- 돼지고기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농장식별돼지고기를 판매할 경우, 해당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식육표지판,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실적 이력관리시스템 신고</li> </ul> </li> </ul>

## 참고 14

##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불제

- (목 적)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
- (대 상)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무항생제)을 받은 농업인
- (지 원) 7개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토종닭 포함), 오리, 오리알),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 농가당 최대 20백만원/년
- (지급단가) 축종별로 유기·무항생제에 따라 지급

축 종	유 기	무항생제	비 고
한 우	170천원/마리	65천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젖소(우유)	50원/ℓ	10원/ℓ	
돼 지	16천원/두	6천원/두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개	2원/개	

### □ 지원실적 (2011~2012)

연도별	계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가수	지급액(천원)	농가수	지급액	농가수	지급액
2012	760	6,998,380 (9,208)	23	420,245 (18,272)	737	6,578,135 (8,926)
2011	307	2,998,680 (9,768)	6	87,779 (14,630)	301	2,910,901 (9,671)

\* ( ) : 호당 평균 지원금액, \*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는 2009년부터 시행

- (추진배경)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증가한 동물의 건강·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
  - 국제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이 강화되어 선제적 대응
  - 유럽연합, 미국 등은 동물복지(Animal welfare) 기준 강화
  
- (추진경과) 11년부터 협의회를 구축하여 '12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도입 협의회 개최('11.4월)
  - 동물보호법령 개정으로 인증제 근거마련 ('12.2월)
  - 산란계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12.3월)
  -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초안 마련('12.11월)
  
- (추진현황)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닭, 돼지 등 축종별로 순차적 도입
  - 산란계('12) - 돼지('13) - 육계('14) - 한·육우, 젖소('15)
    - \* '13.2월말 기준 37개 산란계농장 인증
  
- (향후계획) 돼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시행('13.7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

**□ 주요 내용**

- 주의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의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
  - 동물병원은 동물약품 판매시설과 독립
    - 처방과 판매를 분리하여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수의사 처방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수의사 처방 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 수의사 처방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대한수의사회가 구축·관리
  - 수의사 처방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부과
  - 처방전 발급요령 및 보존기간 등 규정
    - 약품의 명칭 표기 방법, 처방전의 유효기간과 처방일수 등에 관한 사항
  - 처방전의 발급수수료의 상한액(5,000원)을 규정
    -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규정 및 발급수수료액을 소비자가 보기 편한 곳에 게시
- ※ '13.8.2일부터 수의사처방제 시행

**□ 향후 추진 계획**

-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구축('13.1월~'13.7월)
- 수의사처방제 시행 홍보·교육 지속 추진

# 방역상 출입통제

소독하지 않고 출입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연락처 :**

<b>농장명</b>	<b>농장번호</b>	<b>농장등급</b>

**농장소독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가축전염병 의심가축 발견 즉시 **1588-9060**으로 신고

**주의사항**

1. 농장·출입자·차량 등 소독·차단방역 철저
2. 매일 가축사육·방역일지 작성
3.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2개월령/3개월령, 이후 5~6개월 간격)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실시
5. 위 4개 항목 미 이행시
  - ▶ 과태료 300~500만원 이하 부과
  - ▶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중단 또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참고 18

## 가축방역사무국 설치 계획(안)

- 명칭 : (가칭) 한·중·일 3국간 가축방역협력 사무국
- 구성 : 총 5인 - 사무국장 1, 연락관 3(국가별 1), 사무원 1
  - \* 사무국장(1)은 사무국 유치국가가 수입하며, 사무원(1)은 별도 채용
- 운영방법 : 3국이 3년마다 번갈아 가며 유치국가의 중앙가축방역 기관에 설치·운영
  - 유치국은 자국의 중앙가축방역기관에 사무실 및 사무집기 등 제공
  - 각 국가는 연락처를 지정, 사무국과 hot-line 가동
  - 유치순서 : 일본(1~3차년도) → 한국(4~6차년도) → 중국(7~9차년도) 등
    - \* OIE 아태지역사무국을 설치·운영한 경험을 고려 일본을 우선순위에 둠
- 운영비용 : 각 국가에서 파견관 인건비, 협력사업 비용 및 사무실 운영경비를 분담 (기금화)
- 사무국 임무
  - 국가별 구제역·AI 발생정보 및 병원체 유전정보 등의 공유, 전파
  - 가축방역 및 검역관련 법규·제도·표준 및 지침 등 정보의 교류
  - 가축질병 진단 및 예방·통제기술 등 기술 교류와 국가간 R&D 협력
  - 교육훈련, 세미나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 등 가축방역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활동
  - 가축방역 전문가의 방문, 교류 및 파견 등에 관한 협력
  - 구제역 등 백신뱅크 공동운영 방안 등 협력사업 개발